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221호

공 시 송 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제418조 위반자에게 동법 제449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통지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4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비오엠투자자문㈜	120-81-8XXXX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131, 5층(양재동)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3. 서류의 내용

1) 대상자 및 처분내용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과태료)
비오엠투자자문㈜	- 업무보고서 미제출 - 대주주 변경사실 등 미보고·미공시 - 임원 선임 및 해임사실 미보고 - 영업정지 사실 등 미보고·미공시 - 해산사유 발생사실 미보고·미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418조	1억950만원

2) 우리 위원회는 귀하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9조에 따라 위 1)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2017. 9. 4까지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80932 / 2017-08-04 14:0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4. 이에 이의가 있으시면 2017. 10. 10까지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의제기시 우리 위원회는 관할법원으로 귀하의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하며 이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동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 동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 동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등

6.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73)로, 납입고지서 발급 등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

2080932 / 2017-08-04 14:0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